프로젝트 이미는 '대체 불가능한 브랜드'를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.

**CONSULTING** 

[강릉 카페 컨설팅]

## Contract

프 로 젝 트 명:강릉카페컨설팅

작업 범위 및 결과물: 브랜드 기획 (1차, 2차 PT)

로고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반

바 작업공간 설계 및 오퍼레이션

커피 교육 및 시그니처 메뉴 개발 (3-5개)

디저트 메뉴 개발 및 교육 (4-5개)

마케팅 기본 세팅

계 약 일: 2025년 월 일

계 약 기 간: 2025년 월 일~2026년 월 일

## **Price**

[

**예금주** 주식회사 경험을선물합니다 | **기업은행** 208-171663-04-015

총 계 약 금	金	<b>삼천만</b> 원정 ( ₩ 30,000,000 )
계 약 금	₩ 6,000,000	(20 %) (계약 체결 후 7일이내)
1 차 납 입 금	₩ 12,000,000	(40 %) (2차 PT 완료 후 7일 이내)
2 차 납 입 금	₩ 9,000,000	(30 %) (음료·디저트 교육 완료 후 7일 이내)
잔 금	₩ 3,000,000	(10 %) (가오픈 이후 7일 이내)

(갑)

상호 또는 명칭 :

주소:

대표자 성명: 문재영 (인)

(을)

상호 또는 명칭 : (주)경험을선물합니다

대표자 성명: 이림 (인)

] (갑)와 **과 (주)경험을선물합니다**(을)는 이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Contract

####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#### 제 1조 (기본 원칙)

본 계약은 "갑"이 제작 의뢰한 프로젝트 제작을 "을"에게 위탁하고, 을은 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제 2조 (법령의 준수)

"갑"과 "을"은 이 프로젝트 제작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.

#### 제 3조 (제작비 지급)

- 1. "갑"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"을"의 지정계좌로 협의한 계약금을 선금으로 지급한다.
- 2. 2차 PT 완료 후 1차 중도금, 음료·디저트 교육 완료 후 2차 중도금, 가오픈 후 잔금을 "을"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.
- 3. 기본 사항 외에 추가 진행되는 옵션 내용의 제작비 지급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.
- 4. "갑"이 "을"에게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에 의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5. "을"이 "갑"의 승인을 받아 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별도 리소스("을"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한함)를 제3자에게 하도급주거나 위탁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, 그 하도급 비용 및 저작권료 등의 비용은 계약 금액과 별도로 실비로 지급한다.

#### 제 4조 (계약내용 변경)

- 1. "갑"과 "을"은 계약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명,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- 2. "갑"의 요구로 작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"갑"과 "을"은 협의하여 프로젝트 내용 변경에 따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.
- 3. "갑"의 요구로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"을"이 이미 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수행하기 전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4. 프로젝트 진행 도중 "갑"의 요청에 의해 작업 방향의 변경이나 작업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, "갑"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하여 작업 기간의 지속이 필요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한다.

#### 제 5조 (부당한 계약 취소 및 부당 반품의 금지)

- 1. "갑"은 계약 체결 후 "을"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,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2. "갑"은 결과물을 수령할 때에 "을"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품하여서는 안된다.

#### 제 6조 (이행 지체)

- 1. "을"이 계약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, "갑"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(0.15)/100을 곱한 금액 (이하 "지체상금"이라 한다)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.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2.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, "갑"의 책임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, 특수한 사유에 의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.

## Contract

####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#### 제 7조 (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)

- 1. "갑"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"을"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,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안된다.
- 2. "을"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, "을"의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,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로 본다.

#### 제 8조 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- 1. "갑"과 "을"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
  - a. "갑"또는 "을"이 재해, 영업취소, 정지처분, 거래정지처분,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, 파산,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 - b. "갑"또는 "을"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 - c. "갑"이 정당한 사유 없이 "을"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"을"의 작업 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- d.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프로젝트 착수를 지연하여 프로젝트 완료 및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"갑"또는 "을"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"을"은 "갑"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"갑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4. "을"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그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을"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할 대금에 대하여 "갑"과 합의 하여야 한다.

#### 제 9조 (자료의 제공 및 반환)

- 1. "갑"은 "을"에게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, "을"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"갑"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, 정보, 기타 모든 자료를 "갑"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,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- 2.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제, 해지된 경우, "을"은 "갑"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#### 제 10조 (권리의 귀속 및 활용)

- 1. "을"이 제출한 안들 중 "갑"이 선택한 1개 안에 대한 권리는 "갑"이 "을"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"갑"에게 귀속한다.
- 2. "을"은 "갑"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1항의 권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단, "을"이 자사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와 기타 업무상 자료 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3. "갑"이 선택하지 아니한 기획안, 디자인 시안 등 선정되지 않은 안에 대한 권리는 "을"에게 있으며, "갑"이 이 안들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때는 "을"에게 별도 혐의 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.

#### 제 11조 (특수조건)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제 12조 (작업 범위의 명확화)

본 계약에 포함된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:

## Contract

###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- 1. 브랜드 기획 (8,000,000원)
  - 심층 인터뷰 및 브랜드 전략 수립
  - 1차, 2차 PT 진행
  - 브랜드 정체성 문서 전달
- 2. 시각화 (3,000,000원)

디자인 작업 (디자인 파일 전달)

- 로고
- 브랜드카드
- 메뉴판
- 테이크아웃 컵
- 명함
- 스티커
- 도장
- \_ - 간판
- 디저트 포장
- 3. 운영 (6,000,000원)
  - 커피 추출 기본 교육
  - 바 작업공간 설계 및 오퍼레이션 (머신 배치, 동선 설계 등)
  - 시그니처 음료 개발 (3-5개)
  - 운영 매뉴얼 작성
  - 오픈 지원 1일
- 4. 디저트 개발 (6,000,000원)
  - 4-5개 메뉴 개발 및 레시피 작성
  - 원가 계산 및 판매가 가이드
  - 현장 제조 교육
  - 레시피 매뉴얼 작성
- 5. 마케팅 (3,000,000원)
  - 인플루언서 초대 행사 기획
  - 네이버 플레이스 초기 세팅
  - 인스타그램 계정 초기 세팅
  - 기본 사진 촬영
- 6. 출장 (계약금액에 포함)
  - 총 4회 출장 포함 (2인 기준, 교통비·포함)

## 제 13조 (디자인과 제작의 구분)

- 1. 디자인 작업
  - "을"은 제12조 2항에 명시된 항목들의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, 디자인 파일 (AI, PDF 등) 및 제작 사양서를 "갑"에게 전달한다.
- 2. 샘플 제작
- "을"은 디자인 검토 및 테스트를 위해 각 항목별 샘플 1-2개를 제작한다.

## Contract

####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#### 3. 대량 제작

샘플을 초과하는 대량 제작 비용은 본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, "갑"이 제작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지불한다.

#### 제 14조 (운영 물품 및 장비)

- 1.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음 물품들의 구매 및 관리는 "갑"이 진행한다:
  - 식기류, 커트러리, 트레이
  - 테이크아웃 소모품 (컵, 뚜껑, 홀더 등의 대량 구매)
  - 청소 용품 및 기타 운영 물품
  - 가구, 조명, 오브제, 소품
  - 디저트 제조 장비 및 재료
  - 커피 원두 및 부재료
- 2. 제12조 2항에 명시된 디자인 항목들은 디자인 파일 및 샘플 제작까지만 포함되며, 대량 제작은 "갑"이 진행한다.

#### 제 15조 (출장 및 현장 지원)

- 1. 본 계약에는 총 4회의 출장이 포함되어 있다 (2인 기준):
  - 1회차: 브랜드 기획 및 심층 인터뷰
  - 2회차: 현장 확인 및 바 작업공간 설계
  - 3회차: 커피 및 디저트 교육
  - 4회차: 오픈 지원 및 최종 점검
- 2. 추가 출장
  - a. 기본 4회를 초과하는 추가 출장이 필요한 경우, "갑"과 "을"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.
  - b. 다음의 경우 추가 출장으로 간주된다:
    -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 요청으로 인한 출장
    - "갑"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방문
    - 오픈 일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방문

#### 제 16조 (디저트 개발 범위)

- 1. 포함되는 내용
  - 4-5개 메뉴 선별 및 레시피 개발
  - 원가 계산 및 판매가 가이드
  - 레시피 매뉴얼 작성 (재료, 분량, 제조법)
- 2. 메뉴 개수

기본 계약에 포함된 메뉴는 4-5개이며, 6개 이상의 메뉴 개발은 "갑"과 "을"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.

## 제 17조 (바 작업공간 설계)

1. 설계 범위

## Contract

####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

"을"은 다음의 바 작업공간 설계를 수행한다:

- 에스프레소 머신 배치 위치
- 그라인더 배치 위치
- 냉장고, 냉동고 배치 위치
- 재료 보관 동선
- 서빙 동선
- 작업 효율성 최적화
- 2. 인테리어와의 구분

매장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, 시공, 감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, "을"은 바 작업공간 설계에 집중한다.

3. 인테리어 업체 협업

"을"은 "갑"의 인테리어 업체에 바 작업공간 설계를 협의하여 원활한 시공을 지원한다.

## 제 18조 (추가 작업 및 변경)

1. 추가 작업

본 계약서 제12조에 명시된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, "갑"과 "을"은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 범위 및 비용을 확정한다.

2. 추가 작업의 예시

다음은 추가 작업의 예시이다:

- 추가 출장 (4회 초과)
- 기본 디자인 외 추가 굿즈 디자인 (에코백, 엽서, 포스터 등)
- 6개 이상 디저트 메뉴 개발
- 시즌 메뉴 기획 및 개발
- 오픈 이후 장기 운영 지원
- 추가 마케팅 기획 및 실행
- 3. 협의 절차

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, "갑"과 "을"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.